2017년도 (사)한국생태학회 제 1회 임시총회 회의록

□ **일　시 :** 2017년 8월 9일(수) 18:20 ~ 19:00

□ **장　소 :** 명지대학교(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2535호

□ **참석자 :** 총 350명 중 176명 출석(참석: 76명, 위임: 100명)

□ **이　사 :** 김재근 (인) 이재석 (인)

장이권 (인) 이훈복 (인)

김흥태 (인) 오능환 (인)

□ **회의내용**

1. 성원보고 : 정관 제18조에 의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참석 76명, 위임 100명, 총 176명>

2. 업무 보고

가. 2017년 한국생태학회 월별 주요 업무 보고

- 원안대로 인준함

나. 2017년 한국생태학회 위원회별 업무 보고

- 원안대로 인준함

3. 정관 개정 안건

가. 제안 설명 : 회장이 장이권 기획재정위원장 겸 부회장에서 정관 개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함

나. 제안 사유 : 7월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정관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의 허가를 요청하고자 본 임시총회에서 의결을 받기 위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음

다. 개정 사항 주요 내용

- 정관 중 잘못된 문구 수정 및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 정관과 현재 학회의 운영을 일치시키고자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 관련 내용

한국생태학회 정관(현재)	한국생태학회 정관(개정내용)
제1조(목적) 본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은영에 -----	제1조(목적) 본 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제3조(사업) 5. <신설>	제3조(사업) 5. 생태학 관련 용역 및 연구사업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등)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2.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신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등)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2.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제명할 수 있다. ③ 본 학회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자격 정지된 회원의 복권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임원) 2. 부회장 3인 이내	제9조(임원) 2. 부회장 5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임기 등) 2.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신설>	제10조(임원의 임기 등)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부회장 5인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잔여인원은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3.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제청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2.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제18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재적회원 1/10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위임은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정한다.
제23조(평의원회의 기능) 1. 이사회에서 추천된 회장과 감사의 선출심의	제23조(평의원회의 기능)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제26조(평의원회 소집 및 의결)	제26조(평의원회 소집 및 의결) (환경부 권

평의원회의 소집은 재적 평의원의 1/3이상이 요구할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1/3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서면위임은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결은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	고사항) 1. 평의원회의 소집은 재적 평의원의 1/3이상이 요구할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2.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1/3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서면위임은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결은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 3.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절차는 관례에 따른다. (또는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시 투표권은 관례에 따른다.)
제33조(위원회) 1. 본 법인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 2. 제 1항의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33조(위원회) 1. 본 학회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 2. 제 1항의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1조(준용) <신설>	제41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4. 심의・의결

가. 총회에서 내용 변경 후 의결 사항

- 제 10조 2항: '단, 부회장 5인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잔여인원은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단, 부회장 5인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잔여인원은 회장이 제청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 10조 3항: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제청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제청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 26조 1항: '평의원회의 소집은 재적 평의원의 1/3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평의원회의 소집은 재적 평의원의 1/3이상이 요구하거

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제 26조 3항: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절차는 관례에 따른다.'->'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시 투표권을 포함한 절차는 관례에 따른다.'

나. 나머지 개정내용 : 이견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정관변경(안)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의결되었음을 선언

다. 의결 내용 정리

한국생태학회 정관(현행)	한국생태학회 정관(개정)
제1조(목적) 본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은영에 -----	제1조(목적) 본 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제3조(사업) 5. <신설>	제3조(사업) 5. 생태학 관련 용역 및 연구사업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등) 3.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4. 2.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신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등)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2.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제명할 수 있다. ③ 본 학회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자격 정지된 회원의 복권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임원) 2. 부회장 3인 이내	제9조(임원) 2. 부회장 5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임기 등) 2.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신설>	제10조(임원의 임기 등)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부회장 5인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잔여인원은 회장이 제청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제청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2.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제18조(의결정족수)	제18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재적회원 **1/10**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위임은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정한다.**
제21조(평의원회) 본 학회의 회무 제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기 평의원회를 둔다.	제21조(평의원회) 본 학회의 회무 제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3조(평의원회의 기능) 1. 이사회에서 추천된 회장과 감사의 선출 심의	제23조(평의원회의 기능)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제26조(평의원회 소집 및 의결) 평의원회의 소집은 재적 평의원의 1/3이상이 요구할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1/3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서면위임은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결은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	제26조(평의원회 소집 및 의결) **1. 평의원회의 소집은 재적 평의원의 1/3이상이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2.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1/3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서면위임은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결은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 **3.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에 시 투표권을 포함한 절차는 관례에 따른다.**
제33조(위원회) 2. 본 법인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 2. 제 1항의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33조(위원회) 2. 본 **학회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 2. 제 1항의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39조(해산) 2. 본 학회가 해산 시 잔여재산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9조(해산) 2.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1조(준용) <신설>	**제41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5. 폐회 : 회장은 학술대회와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감사 인사를 하고 폐회를 선언

□ 회의사진